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1일, 최은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4.11.27.)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2.10.)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2.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25.) 상정,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은석의원)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수입·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한 박성훈의원·김태년의원·김선민의원·남인순의원·한지아의원·전진숙의원·김준혁의원·송언석의원·최은석의원·조은희의원·김민전의원·송재봉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